



법규관련

산업자원부공고 제2003-179호

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3년 9월 8일

산업자원부장관

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(' 03.9.8)

1. 개정이유

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
별표3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과
관련하여 용기충전시설의 안전거리기준이 국
제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
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재량권을 삭제하
고, 과도하게 설정된 안전거리기준을 폐지하
며, 지자체에 대한 재량 위임범위를 구체화하
므로써 사업소경계와의 안전거리 및 보호시설
과의 안전거리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

(다))

나. 액화석유가스중 저장설비 · 충전설비
및 탱크로리 이입 · 충전장소에서 보호
시설까지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
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고, 시장 · 군
수 · 구청장에 대한 재량위임범위를 "액
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경계와의 안전
거리기준의 2배 범위이내"로 구체화 함
(안 별표3 제1호가목(1) 의(라)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3
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
산업자원부장관 [참조 : 에너지안전과 전화
02-2110-5444, Fax 02-503-9632, 황명호
사무관 E-Mail (hwang422@mocie.go.kr)]에게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주요골자

가.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 · 충
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 · 충전장소
에서 사업소 경계까지의 안전거리기준
에 대하여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부
여한 "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
더하여 정할 수 있다"라는 재량규정을 삭
제함(안 별표3 제1호 가목(1)의(가)내지

가. 입법예고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
여부와 그 사유)
나. 기타 참고사항 등